

## 특집

소음·진동 관련법규 현황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 흥 식\*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 1. 머리말

이 글에서는 2008년 12월에 환경부에서 법률안을 제출하여 현재 일부 시행되고 있고, 일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은 소음·진동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사장의 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 시행자에게 소음측정기기의 부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지정의 해제 및 제작차 인증시험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개정법률안에서는 소음진동이 규제대상이 아닌 관리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소음지도의 작성, 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항목을 신설하고 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절차를 폐지한 점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 2.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 (1) 제명의 변경(안 제명)

- 법률의 제명을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변경하여 소음·진동이 관리의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 규정을 정리함.

## (2) 소음지도의 작성(안 제4조의2 신설)

-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교통량 증가 등으로 소음에 의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고, 소음의 발생원인 및 분포가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여 소음 저감대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없음.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소음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음의 분포를 표시한 소음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이와 같이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음지도의 작성성이 활성화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소음방지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3) 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절차의 폐지(현행 제13조 삭제)

- 사업자가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동 시설을 가동하려면 별도로 가동개시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 E-mail : hsk@honam.ac.kr / (062) 940-5455

-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또는 설치신고 외에 가동개시신고는 하지 아니하도록 함.
- 이와 같이 가동개시신고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안 제22조의2 신설)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 시행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이와 같이 공사 시행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권고함으로써 공사 시행자의 자발적인 소음저감노력을 유도하여 공사장소음으로 인한 민원 및 분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5)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 기준 권고(안 제45조의2 신설)

- 환경부장관은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권고기준을 정하고 철도차량을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저감을 유도함으로써 철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고 철도인근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개정법률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

개정법률안에 대한 구체적인 신·구조문을 대비한 표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개정법률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

현 행	개 정 안
<u>소음·진동규제법</u>	<u>소음·진동관리법</u>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u>관리·규제</u> 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관리</u>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騒音)”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u>사용</u>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 10. (생략)	제2조(정의) ----- 1. ----- <u>사용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활동</u> ----- 2. ~ 10. (현행과 같음)
제3조(상시 측정) ①(생략)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관할 구역의 소음·진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 측정하여 측정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생략)	제3조(상시 측정) ①(현행과 같음)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 -----
<신설>	③(현행과 같음) 제4조의2(소음지도의 작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u>교통기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지역의 소음의 분포 등을 표시한 소음지도(騒音地圖)를 작성</u>

현행	개정안
<p>제6조(소음·진동 공정시험 방법) 환경부장관은 소음·진동을 측정할 때 측정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소음·진동 공정시험(公定試驗)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이 소음·진동의 측정대상과 그 시험 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 방법에 따른다.</p>	<p>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작성하는 시·도지사에 대하여는 소음지도 작성·운영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p> <p>&lt;삭 제&gt;</p>
<p style="text-align: center;"><b>제2장 공장 소음·진동의 규제</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2장 공장 소음·진동의 관리</b></p>
<p>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를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① ----- -----<u>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u> ----- -----<u>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u>----- -----</p> <p>② ----- ----- ----- <u>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u>-----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방지시설의 설치)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소음·진동을 제7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소음·진동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배출시설의 기능·공정(工程) 또는 공장의 부지여건상 소음·진동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경우</p> <p>2. (생략)</p>	<p>제9조(방지시설의 설치) ----- ----- ----- ----- ----- ----- -----</p> <p>1. <u>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u> ----- ----- -----</p> <p>2. (현행과 같음)</p>
<p>제10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① (생략)</p> <p>&lt;신 설&gt;</p> <p>② (생략)</p>	<p>제10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p>

현행	개정안
<p>②(생략)</p> <p>제13조(가동개시 신고)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변경은 제외한다)을 끝내고 배출시설을 가동(稼動)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제14조(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사업자는 제7조 또는 제12조 제2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p> <p>제15조(개선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업 중인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는 데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p> <p>제16조(조업정지명령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간대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공장에는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②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진동으로 건강상에 위해(危害)와 생활환경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해당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조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제17조(허가의 취소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취소(신고 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말한다)를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lt;단서 신설&gt;</p> <p>1.(생략)</p> <p>2. 제7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p> <p>3. 4.(생략)</p>	<p>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신고·허가 또는 변경 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p> <p>③(현행 제2항과 같음)</p> <p>&lt;삭제&gt;</p> <p>제14조(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끝내고 배출시설을 가동(稼動)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이 제7조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6호 및 제60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15조(개선명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 -----.</p> <p>제16조(조업정지명령 등) ①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 -----.</p> <p>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 -----.</p> <p>제17조(허가의 취소 등)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 ----- .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p> <p>1.(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3. 4.(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p> <p>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하면 별도의 방음 대책을 세워야 한다.</p> <p>⑤제4항에 따른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와 별도의 방음 대책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lt;신 설&gt;</p>	<p>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 ----- -----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p> <p>② ----- -----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p> <p>③ 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p> <p>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것. 다만, 공사현장의 특성 등으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할 것</p> <p>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와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lt;삭 제&gt;</p> <p>제22조의2(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제23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제23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 .</p> <p>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p>
<p>제24조(이동소음의 규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의</p>	<p>④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 .</p> <p>제24조(이동소음의 규제) ①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p>

현 행	개 정 안
<p>원인을 일으키는 기계·기구[이하 “이동소음원(移動騒音源)”이라 한다]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p> <p>②(생략)</p> <p>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면 그 지정 사실을 <u>고시하여야</u>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제25조(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방지) 시장·군수·구청장은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경찰청장에게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폭약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의 규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구청장 -----</p> <p>-----</p> <p>-----</p> <p>-----</p> <p>-----</p> <p>②(현행과 같음)</p> <p>③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p> <p>----- <u>고시하고,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u> -----</p> <p>-----</p> <p>제25조(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방지) <u>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u> -----</p> <p>-----</p> <p>-----</p> <p>-----</p>
<p><b>제4장 교통소음·진동의 규제</b></p>	<p><b>제4장 교통소음·진동의 관리</b></p>
<p>제26조(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의 지정)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통기관이 발생시키는 소음·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환경부장관은 교통소음·진동의 <u>규제가 필요하다고</u> 인정하는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③제1항에 따른 규제지역의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④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규제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u>고시하여야</u>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lt;신 설&gt;</p> <p>제27조(교통소음·진동의 한도) 제26조에 따른 규제지역 안의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한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u>그 한도 및 시행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u> 한다.</p>	<p>제27조(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u>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이하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u></p> <p>②----- 관리가 ----- 관리지역 -----</p> <p>-----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p> <p>-----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p> <p>-----</p> <p>③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p> <p>④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 <u>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u> -----</p> <p>⑤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u>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u></p> <p>제26조(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이하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이라 한다)은 -----</p> <p>----- <u>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u> -----</p>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자동차 운행의 규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에 따라 규제지역 안을 통행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하 "자동차운행자"라 한다)에게 「도로교통법」에 따른 속도의 제한·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자동차 운행의 규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u>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u> 을----- ----- ----- ----- -----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26조에 따른 규제지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제27조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 ----- <u>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u> ----- ----- ----- <u>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u> 을----- ----- -----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제31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생략)	제31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현행과 같음)
②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자동차의 <u>인증내용</u> 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u>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u>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인증의 시험과 시험수료, 인증의 방법 및 인증의 면제와 생략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u>인증의 시험방법과 절차</u> ----- ----- -----
<신 설>	제31조의2(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시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 및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인증시험을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3. 그 밖에 인증시험과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③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1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환경부장관은 인증대행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



현 행	개 정 안
<p>제36조(운행차의 수시점검)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②·③ (생략)</p> <p>제38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운행차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제41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된 자료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 결과를 확인받은 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5장 항공기 소음의 규제</b></p> <p>제39조(항공기 소음의 규제) ①·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른 조치는 항공기 소음 규제에 관한 다른 법률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방음시설의 성능·설치기준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하 "설치기준등"이라 한다)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이 방음시설의 설치기준등을 달리 정하고 있으면 그 설치기준등에 따른다.</p> <p>제41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① 제38조제3항에 따른 운행차의 개선 결과 확인업무를 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장비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생략)</p> <p>제43조(등록취소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가</p>	<p>우에는 그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p> <p>2. 제31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시험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을 한 경우</p> <p>3.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p> <p>4.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p> <p>제36조(운행차의 수시점검) ① -----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38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 -----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된 ----- -----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p> <p style="text-align: center;"><b>제5장 항공기 소음의 관리</b></p> <p>제39조(항공기 소음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항공기 소음 관리 -----.</p> <p>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성능평가 등 사후관리 -----.</p> <p>제41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① -----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3조(등록취소 등)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p>

현 행	개 정 안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 8. (생략)</p> <p>제44조(소음도 검사 등) ① 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를 판매·사용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騒音度) 검사를 받아야 한다. &lt;단서 신설&gt;</p> <p>② ~ ④ (생략)</p> <p>&lt;신설&gt;</p> <p>제46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47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해서 배출허용기준과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음과 진동 검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1. ~ 8. (생략)</p> <p>② 환경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 검사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51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제23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공사의 폐쇄명령</p> <p>&lt;신설&gt;</p> <p>3. ~ 5. (생략)</p> <p>제53조(수수료)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p>	<p>장 -----</p> <p>-----</p> <p>-----</p> <p>1. ~ 8. (현행과 같음)</p> <p>제44조(소음도 검사 등) ① -----</p> <p>----- . 다만,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발생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소음도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45조의2(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 환경부장관은 철도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을 정하여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이에 적합한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p> <p>제46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제19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 자 ----- 환경기술인 -----</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7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p> <p>-----</p> <p>-----</p> <p>-----</p> <p>-----</p> <p>-----</p> <p>-----</p> <p>1. ~ 8. (현행과 같음)</p> <p>② 환경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p> <p>-----</p> <p>-----</p> <p>③ (현행과 같음)</p> <p>제51조(청문) 환경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제23조제4항 -----</p> <p>2의2. 제31조의3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p> <p>3. ~ 5. (현행과 같음)</p> <p>제53조(수수료) ① 제8조제1항 -----</p>

현 행	개 정 안
<p>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p> <p>&lt;신 설&gt;</p> <p>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u>500만원 이하의 벌금</u>에 처한다.</p> <p>1. (생 략)</p> <p>2. 제1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p> <p>3. (생 략)</p> <p>4.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 반한 자</p> <p>5. (생 략)</p> <p>&lt;신 설&gt;</p> <p>6. (생 략)</p> <p>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 하의 징역 또는 <u>200만원 이하의 벌금</u>에 처한다.</p> <p>1.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u>아니하고</u> 배출시설을 설치하 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p> <p>2.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p> <p>3.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p> <p>4. ~ 6. (생 략)</p> <p>제59조(과태료) &lt;신 설&gt;</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100만원 이하의</u>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8조제2항, 제19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 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u>아니한</u> 자</p> <p>2. 제1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 -----.</p> <p>② 제31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변경인증 또는 인증생략을 신 청하려는 자는 <u>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u>를 내야 한다.</p> <p>제57조(벌칙) ----- <u>1천만원</u> <u>이하의</u>-----</p> <p>1. (현행과 같음)</p> <p>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를 받은 자</p> <p>3. (현행과 같음)</p> <p>4. 제23조제4항 ----- -----</p> <p>5. (현행과 같음)</p> <p>5의2. 제31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u>한 자</u></p> <p>6. (현행과 같음)</p> <p>제58조(벌칙) ----- <u>500만원</u> <u>이하의</u>-----</p> <p>1. ----- <u>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u> <u>방법으로 신고를 하고</u> -----</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4. ~ 6. (현행과 같음)</p> <p>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300만원 이하의 과태료</u>를 부과한다.</p> <p>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p> <p>2.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u>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u> 자</p> <p>② ----- 하는 자에게는 <u>200만원 이하의 과태료</u>를 부과한다.</p> <p>1.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u>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u> 자</p> <p>2. 제14조를 위반하여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배출허 <u>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한</u> 자</p> <p>2의3. 제2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u>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u> <u>경신고를 한</u> 자</p> <p>2의4.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p>

현 행	개 정 안
<p>3.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특 정공사를 시행한 자</p> <p>4.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한 자</p> <p>5. ~ 10. (생략)</p> <p>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 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 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p> <p>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 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한다.</p> <p>⑤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 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수한다.</p> <p>제60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 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 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p> <p>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 의 벌금형을 과한다.</p>	<p>나 기준에 맞지 아니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자</p> <p>3.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아니 한 자</p> <p>4.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소음·진동 규제기 준 -----</p> <p>5. ~ 10. (현행과 같음)</p> <p>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 환경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제59조(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 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 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 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 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 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4. 맺음말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은 머리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8년 12월에 환경부에서 법률안을 제출하여 현재 일부 시행되고 있고, 일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소음진동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써, 소음진동관련업계나 전문가 및 일반 이해당사자 들에게는 매우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내용인 만큼 변경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관련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끝으로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신 환경부 생활환경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글을 맺는다. 